

# 대한외과학회 세부전문의 추진 현황과 간담체외과 세부전문의 기준

세부전문의추진위원회,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박원겸

## 외과 분과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경과

### 1. 외과 분과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외과 분과전문의 제도는 외과 분과를 세부 전공하는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진료, 교육 및 연구 수준의 향상을 기하여 외과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대한외과학회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그 배경 및 필요성이 하기와 같이 요약된다.

#### 1) 학문적 측면

- 의학지식의 급격한 팽창
- 외과학의 급속한 발전
- 의학의 세분화 경향
- 의학의 전문화 경향

#### 2) 의료 기술적 측면

- 첨단 의료기기의 발전
- 새로운 기기의 사용방법 습득 및 수련의 필요성

#### 3) 국민의 의료요구 추이의 변화

- 복지 건강 사회의 지향
- 양질의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 서비스 요구도 증가

#### 4) 현실적 측면

- 이미 국외 및 국내의 대부분 수련병원에서 분과 수련제도를 시행
- 교육병원에 근무하는 수련지도의(교육지도자)의 대다수가 분과 해당 업무만 수행
- 대한외과학회의 학술활동도 분과별로 수행되고 있음.

#### 5) 의료산업적 측면

- 외과 분야의 세분화 전문화로 의료관광 활성화
- 외과의 수련기피의 해결방안

## 외과 분과전문의 제도 추진경과

항목	일시	내용
1. 세부전문분과 위원회 설립	2006	
2. 세부분과학회와의 관계조정 및 정립	2007. 4. 23 2007. 11. 7	2007년도 세부분과협의회 회의 모든 세부분과학회가 찬성하고 문제점 지적
3. 정책심포지움 개최	2007. 11. 7	추계학술대회(위기의 외과 구하기)
4. 세부전문의 제도 운영을 위한 TFT 운영 및 기반조성	2008. 3. 5 2008. 5. 9	세부분과협의회 회의 심포지움(찬반토론)
5. 대한외과학회와 세부전문학회간의 정보교환 및 편의성 향상방안 연구	2009	
6. 세부전문분과위원회 구성	2009. 2. 2	위원장: 김영진, 간사: 이길연 위원: 권오정, 김선희, 김성철, 김남규, 김종현, 노동영, 노성훈, 정상설, 최윤백, 홍석준
7. 세부전문분과위원회 2차 회의	2009. 3. 30	TFT 위원장: 김영진, 간사: 이길연 위원: 강원경, 김성철, 김준기, 문병인, 박우찬, 박훤겸, 윤익진, 허준, 허혁, 형우진
8. TFT 1차 회의	2009. 4. 27	분과별 규정안 초안
9. TFT 2차 회의	2009. 5. 25	의학회 질의서 발송
10. TFT 3차 회의	2009. 7. 15	분과별 규정 검토
11. 위원회 및 TFT 합동 회의	2009. 9. 9	분과별 규정 발표 및 토론
12. 외과학회 이사회	2009.	분과전문의 규정 토론
13. 외과학회 이사회	2010.	분과별 규정 발표 및 토론
14. TFT 4차 회의	2010. 3. 10	분과별 최종안 토론 및 수정
15. 위원회 및 TFT 합동 회의	2010. 3. 19	분과별 최종안 추인
16. 규정과 동 시행규칙 발간	2010. 3.	

## 외과 분과전문의 제도 연간 업무일정표

월일	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3. 2	당해년도 연수교육실시 총괄 및 세부계획서 외과학회 홈페이지에 게재, 수련병원 배포	
3. 30	분과전문의 자격인정 시험 공고	분과전문의 시험문제 의뢰
	외과학회 홈페이지에 게재, 수련병원 배포	
4	외과분과전문의 제도 설명회	
5. 1	전년도 수련이수자 명부	
	당해년도 전임의 명부 및 기록카드	
	당해년도 교육지도자 명부에 대한 제출공지	

5. 31	상기 명부 및 기록카드에 대한 접수 마감	
6	분과전문의 자격인정 시험 원서교부 및 접수	응시자격 심사
7	분과전문의 자격인정 시험 합격자 발표	분과별 시험문제로 공통 실시
8. 1	분과전문의 자격갱신 신청 공지	
8. 31	분과전문의 자격갱신 접수 마감	
9. 1	익년도 수련병원 지정 신청 공지	
9		자격 갱신 심사
9. 3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자 확정	
10. 15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증 및 자격갱신증 발급	
10	익년도 수련병원 지정 신청 접수 마감	
11	익년도 연수교육 신청 공지	
12		익년도 수련병원 지정 신청 및 연수교육 신청 심사
12. 31	익년도 수련병원 지정서 발급	

## 외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 ▶ 외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외과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외과 분과전문의”라 함은 외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외과학회가 인정하는 외과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외과분과에 관한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임상외과사를 말한다.

#### 제 3 조 (의의)

외과 분과전문의의 자격은 외과분과의 외과전문의사로서 임상외과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대한외과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 제 4 조 (분과)

대한외과학회는 아래와 같이 9개 외과분과 전문과목과 해당 분과의 분과전문을 인정한다.

- 1) 간담취외과 분과
- 2) 갑상선-내분비외과 분과
- 3) 대장항문외과 분과
- 4) 소아외과 분과

- 5) 위장관외과 분과
- 6) 유방외과 분과
- 7) 임상중양외과 분과
- 8) 혈관외과 분과
- 9) 화상외과 분과

### 제 5 조 (조직)

외과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산하에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한다.

- 1) 외과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 (1)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한외과학회의 세부전문분과 위원회 이사가 되고 12명 이내의 관리위원을 둔다.
  - (2) 관리위원 중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선출한다.
  - (3) 관리위원회는 외과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4) 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 2) 분과 위원회
  - (1) 관리위원회 산하에 제4조에 규정한 9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 (2) 각 분과위원회에는 관리위원장이 추천,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씩 선출한다.
  - (3)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추천, 관리위원장이 임명하는 12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 (4)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 6 조 (수련)**

- 1) 외과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외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 2) 수련기간은 외과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 3) 수련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단, 군의관에서 전역하는 경우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4) 전임의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 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수련병원)**

-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외과가 설치되어 있고 외과전문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외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하여 수련병원으로 지정한다.
- 3)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해당 분과위원회 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자격인정)**

- 1) 자격인정 방법
  - (1)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대한외과학회에 제출하고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수험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해 시험을 시행한다.
  - (2) 외과 분과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대한외과학회에서는 자격인정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인정료를 징수한다.
  - (3)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2) 자격인정 기준
  -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외과학회 정회원인자
  - (2) 자격인정 신청 시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자, 단 군 복무기간은 예외로 인정한다.
  - (3) 대한외과학회 지정 외과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외과 해당 분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
  - (4) 상기 제 1, 2, 3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자격인정증을 교부한다.
  - (5) 기타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자격인정 시험에 응시하거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 9 조 (시험)**

- 1) 분과전문의 시험은 매 1년 마다 시행한다.
- 2) 분과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1) 자격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 년, 월, 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매 5년 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외과 분과전문의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외과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외과 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 (1) 외과 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갱신 신청 시 대한외과학회 정회원으로 5년간 3회 이상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자
- (2) 외과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
- (3) 최근 5년간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
- (4) 상기 제 1, 2, 3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 자격 갱신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 (5) 단, 60세 이상은 평점 취득 및 갱신관련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상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그 결과를 관리위원장을 통해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제 4 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8월말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외과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증 사본
- 2)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 3)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 5 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외과 분과전문의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6조 및 제 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1) 외과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년간 자격갱신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2) 2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외과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 7 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외과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갱신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외과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 8 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

- 1) 본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별표 목록 -**

-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계)
-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관계)
- <별표 3> 전임의 정원기준(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관계)
- <별표 4> 수련내용(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계)
-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관계)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계)**

분 과	공 인 학 회	인 정 학 회	관 련 학 회
간담체외과	대한외과학회 한국간담체외과학회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이식학회 IHPBA (국제간담체학회) APHPBA (아시아태평양간담체학회) SAGES (미국복강경외과학회) IASGO (국제소화기내과종양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AGA (미국소화기학회) ASGE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 ACS (미국암학회), AASLD (미국간학회) ILTS (국제간이식학회), IPS (국제췌장학회) ASP (미국췌장학회), APDW (아태소화기학회) APSDE (아태소화기내시경학회) APCC (아태암학회), APASL (아태간연구회) UEGF (유럽소화기학회) UEGW(유럽소화기내시경학회)

			ESMO (유럽암학회), EASL (유럽간학회) EHPBA (유럽간담췌외과학회) EAES (유럽내시경외과학회) JSGE (일본소화기학회) JGES (일본소화기내시경학회) JHBP (일본간담췌외과학회) 비고: 상기에 기술되지 않은 학회에 참석 후 평점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경우는 자격인정 위원회에서 별도 심사 후 평점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	--	--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관계)

분과	학술지
간담췌외과	대한외과학회지, 한국간담췌외과학회지,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지, 대한이식학회지, 대한간학회지, 대한소화기학회지, GUT and Liver,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암학회지 그 외에 #SCI나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비고: 상기에 기술되지 않은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평점을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는 자격인정위원회에서 별도 심사 후 평점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별표 3> 분과전문의 수련의 정원기준(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관계)

분과	분과전문의 수련의 정원
간담췌외과	교육지도자수 - 0

<별표 4> 수련내용의 분과별 기준(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 3항 관계)

분과	수련내용	기준
간담췌외과	수련 기간 중 총 진료 환자 수	(1) 수술 집도 및 보조 50예 이상 간절제술, 담도절제 및 담도장문합술, 췌장절제술, 간췌이식의 공여자 및 수혜자 수술, 비장 절제술을 비롯한 shunt 수술 등 (권고사항) ① 악성종양 10예 이상 ② 복강경 담낭절제술 30예 이상 (2) 입원환자 진료 100명 이상(간, 담도, 췌장 및 이식환자 50명 이상) (3) 외래 환자 200명 이상 → 응급실 환자를 외래 개념에 포함하여 100명 이상
	교육내용	(1) 간담췌외과세부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2) 간담췌외과세부분과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3) 전문검사의 결과 판독능력 (4) 전문 진료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5) 인성교육

## &lt;별표 5&gt; 수련병원 지정기준(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관계)

분 과	수련병원 지정기준
간담췌외과	1) 교육지도자 수: 1명 이상 2) 병상 수: 3차 의료기관 또는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2차 의료기관 3) 시설: 필수: 외과 전용 수술실 외과 전용 복강경수술실 외과 전용 수술실 초음파 설비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및 내시경 초음파 검사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장비 복부 초음파 (US), CT, MRI 촬영 장비 권장사항: 방사선동위원소 검사 치료내시경 및 소화관 생리 검사 4) 연관된 타과의 존재여부: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상기 모든 규정은 분과학회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로 수정 및 개정할 수 있다.